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3조)
 1.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가. 범죄취약지역 협의회 합동 순찰 지원
 나.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교육
 다.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캠페인
 2.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가.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
 나.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견학
 3.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3,800천원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5. 28. ~ 6. 17.)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2015.6.1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 등을 신설하여

-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찰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통한, 관련 민간단체에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